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)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(이하 “방문판매원등”이라 한다)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의 성명·소속(금융상품판매·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할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)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.

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

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,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연락금지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별표 1에 제1호의2,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등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

11의2.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

11의3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

우

별표 4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	300	100
---	------------	-----	-----

별표 4 제2호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	법 제69조 제3항제1호	1,000	500
카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	법 제69조 제3항제2호	1,000	500

별표 4 제2호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3항”을 “제3항제3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0조의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)</u></p> <p>① <u>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(이하 “방문판매원등”이라 한다)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의 성명·소속(금융상품판매·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할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)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16조의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관련 준수사항)</u> ① <u>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</u></p>

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.

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,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연락금지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

하여야 한다.